<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 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u> <u>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u>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 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 20211303

최초 등록일 : 2021.06.01

최종 등록일 : 2025.04.15

메타스콜레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메타스콜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6길 28, 203호(대치동) [대표 전화번호] 1688-3482 [대표 팩스번호] 02) 553-3482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FC사업팀 / 1688-348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지점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지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 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메타스콜레 외]	L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6길 28, 203호(대치동)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메타스콜레	2019.12.20.		2020.01.21.	정해영	1688-3482		02) 553-3482
	법인등록번호	110	111-7331533	사업자등록번호		856	6-88-01642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정해영	메타스콜레 외 1개	서울특별시 강남	남구 선릉로 76길 2	8, 203호(대치동)
	0 1, 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사내이사	이바다	메타스콜레 외 1개	정해영	1688-3482	02) 553-3482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메타스콜레	_
상 호	메타스콜레 ㅇㅇ센터	-
상표(서비스표)	_	_
그 밖의 영업표지	META SCHOLE EDUCATION	_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927,388	717,766	209,621	297,411	-93,360	-105,033
2022	911,971	597,316	314,655	354,015	14,850	20,736
2021	591,373	457,454	133,919	1,060,289	101,393	88,435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이름	혀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금	면 석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해영	대표	2020.01.21.~현재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바다	감사	2020.01.21.~현재	감사	가맹사업관련 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심	상근	비상근	작천구(형)
2023년 12월 31일	1	1	4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가맹사업 경영	2020.11 ~ 현재	독해랑창의랑 (등록번호: 20201500)라는 영업표지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_	_	-	_	-	_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년 6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고리 코리 <i>1</i> 기 시 . 17.		2021.06.01.~ 2021.08.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23, 7층(대치동, 화남빌딩)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겨자씨의 꿈	정해영	2021.08.20. ~ 2025.03.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6길 28, 203호 (대치동, 타이니캐슬)
	메타스콜레		2025.03.13.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76길 28, 203호 (대치동, 타이니캐슬)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엄	종
메디스코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메타스콜레	교육(교과)	국어, 독서, 독해, 논술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1		2	2022.12.31.		<i>c</i> 2	2023.12.31	·•
시력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_	7	7	-	6	6	_
서울	-	_	_	1	1	_	1	1	_
부산	-	_	_	_	_	-	_	_	_
대구	ı	_	_	_	_	-	_	_	_
인천	1	1	_	1	1	1	1	1	_
광주	_	_	_	_	_	_	_	_	-
대전	-	_	_	_	_	-	_	_	-
울산	-	_	_	_	_	-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
경기	2	2	_	5	5	1	4	4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	_	_	_	_	_	_	-
제주	_	_	ı	_	ı	_	ı	_	_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7	_	_	1	_	6
2022	3	4	_	_	_	7
2021	_	3	_	_	_	3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11	사호/시리	여어교기	정보공개서	신조	가	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 본부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독해랑창의랑	20201500	교육	7/0	9/0	7/0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	10013 zjr	계거시어ㅋ	lolodal	평균 매출		[[]
		2023년 기						
	000014 मी	연간 평균	. 메츠해	연간	평균	연간	평균	
지역	2023년 말	현산 정판	메돌픽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비고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면적		면적		면적	·
		매출액	3.3m ² 당	상한	3.3m ² 당	하한	3.3m ² 당	
			5.5III 8		5.5III 78		3.3111 %	
전체	6	산정불가	-	_	_	_	_	산정 불가
서울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_	-	_	_	_	_	_
대구	_	_	-	_	_	_	_	-
인천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광주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세종	_	-	-	_	_	_	_	-
경기	4	해당없음	_					5곳 미만
강원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	_	_	-
전남	_	_	_	_	_	-	_	_
경북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	_	_	-
제주	_	_	_	_	_	-	_	_

- ▶ 당사의 가맹점은 다른 POS를 사용하여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하기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8. [메타스콜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메타스콜레]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	745일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7 11	스타		지출 비용(단위: 천원,	บ] –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광고	_	2023 연중	465	465	_	-
판촉	_	_	_	_	_	_
합계	_	2023 연중	465	465	_	-

- ※ 상기 광고 및 판촉비는 [독해랑창의랑], [메타스콜레] 합계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상기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을 기재합니다.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대치북지점	전 지점	02-552-660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금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4개월 이내 반환 청구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계약체결일부터 최대 2개월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체결일에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당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예치가맹금을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대신 보험증권을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귀하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의 보험효력은 위 표의 보험기간과 동일하므로 동 기간까지 보험증권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아래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외비용: 지점임대관련 비용]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교육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구분	반환조건	지급시기	비고
		영업표지 사용의 대가(50%)	계약체결 전		-
가맹비	11,000	매뉴얼 제공의 대가(50%)	기술제공 전	계약체결과 동시	-
교육비	2,200	교육운영 / 오픈준비교육	교육참가 전		_



총계	13,200		_
- "	l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현금)보증금	3,000	계약체결과 동시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
총계	3,000	_	-	_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11,000
교육비	2,200
보증금	3,000
합계	16,2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용관 (35평 기준)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기준: 115.5 m²)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외공사)		46,200	1,320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전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때마다
간판 및 사인물	HI 키 키. 코	3,300	314	인테리어 공사 시작과 동시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장비 및 집기	별지 참조	11,000	_	물품 공급 1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초도물품 및 거래품목		4,400	_	물품 공급 3일 이전	발주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됨
총계		64,900	1,854	_	-	_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음향, 각종 가구류, 간판 등 견적 외 품목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11만원(**3.3㎡당 금액/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가맹점사업자	※ 지점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천원	매월 5일	반환 안됨	-	매월 말일 정산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지급명세서 도달 후 7일 이내	_	_	20쪽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무료	비용 통지서 도달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비용 책정
교재 등 상품대금	가맹본부	사용분	사전입금	하자품반품	하자품 반품 외 안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협의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지점환경개선 비용	지정업체 (미지정) 또는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_	_	22쪽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 지	-	-	계속가맹금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해당 없음(직전사업연도 가맹점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관리	당 가맹사업의 기준에 따른 지점운영 관리여부를 조사 실시	수시	문의: 본사 지점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문의: 본사 지점관리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재가맹비 110만원(VAT 포함)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 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 개월 이내에 가	
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모든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야 하며, [별첨 3] 계약 종료 조치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가	게 4 0 교
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제1항의 의무이행 이전에 반환이 있어야 한다.	제42조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부담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교	
재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	
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⑤ 제5항의 경우에 하자 있는 교재(최신버전의 교재 등이 아닐 경우 제외)등에 대하	
여는 그 상태를 감안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상환가격을 결	
정한다.	



5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해당 없음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해당 없음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 리스트] 참조	1 11 0 11 0 2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_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절만 집중 범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의 노하우를 이용한 일체의 교육관련 사업/독서논술활동 사업 일체	메타스콜레, 독해랑창의랑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행정동 단위 당 1개의 가맹학원에 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하여 개설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초·중등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으로 교육수요가 큰 상권은 예외적으로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대치동학원가).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 - 2 - 2	F 0 F 40 40 9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		
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토지하고 30인 이내에 돈이
경우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여부 회사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	토기 → 가매저시어가 도이 →	[총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시역 재소성 완료(신규 섬포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업표지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40조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지점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교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뉴얼 관리 또는 교재활용 등 가맹본부가 정한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32조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3회 이상 교재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4. 가맹본부의 교육메뉴얼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가맹학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지점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필수 교사 교육, 경영지도 등을 이 수하지 않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정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그 외 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계약조문 제41조

- 1.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 시설(변경)계획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 신규 교사 및 직원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3. 지점 점검 후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교육메뉴얼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교재를 일정 분량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 5. 메타스콜레 회원에게 타 교재/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6.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가맹본부의 학원에 등록된 학생, 선생님 및 직원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프로 그램 및 교재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 7.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양수도 진행한 경우
- 8. 경업금지를 지키지 않는 경우
- 9.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재가맹금/교재대금/온라인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 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2조 [즉시계약 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6. 가맹점사업자가 <u>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u>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 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7조 [계약 수정 사유]

○ 이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 모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ĺ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 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 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이 권리이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 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_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u>피성년후견인</u>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메타스콜레]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상권마다 상이함	주 5일 이상(월 20일 이상)	문의: 운영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가맹학원장의 배우자, 직계가족	가맹학원장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지점 관리	담당자 지점 방문 → 지점운영상태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최소 연 2회	각 지역 운영팀	메뉴얼 준수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7.14	라그 서거		부담비율	보다 저귀	비고
구분	광고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끄
	브랜드 및 상품광고	50%	50%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대중매체 광고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가맹점모집 광고	50%	50%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조정가능함)	행사)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물 등의 디자 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 비용이나 직접 제공하 는 경품·기념품·팜플렛· 전단 등의 홍보물 등 의 비용은 가맹점사업 자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월별 판촉 행사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28** (판촉)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교수법, 교재의 구성과 내용, 수업메뉴얼 그 밖 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 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교수법, 교재 등 영업상 비밀이나 노 하우를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가맹점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교육훈련자료 등)의 내용을 무단으 로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일한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



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5조 (손해배상)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위약벌에 관한 사항

관련 계약조문 제46조 (위약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3조를 위반하여 가맹점 운영상 알게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일금오천만원 (\\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약벌과 별개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30일 내외	_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체결 14일 전	-
지점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계약 1일 전	_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_	-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에 가맹금 지급	계약체결 당일	6쪽 참조
지점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3일	_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20일	-
교육 실시	- 지점운영교육 실시	7일	-
지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_	_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7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가맹본부가 지정한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 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지점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점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지점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지점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지점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점환경개선사유 기 기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비고
비용하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지점의 시설 장 ○간판교체 비용 ○지점의 확장	
비, 인테리어 등 이인테라어 공사비용 이전을 수별	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에
의 노후화가 객관 (장바집기의 교체 않는 지점환	개선 계약서 등 공사 가맹본부의 책임
적으로 안정되는 경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없는 사유로 계약이
우 실내건축공사에 ○지점의 확장	또는 수 있는 서류 첨위 종료(계약의 해자
이위생이나 안전의 <u>소요되는</u> 알체의 비용 이전을 수	하는 → 90일 이내에 영업양도 포함되는
결함으로 인하여 단, 가맹사업의 지점환경개	선 : 기맹본부 부담액을 경우 가맹본부
가방(CP) 통일성을 통일성과 무관하게 40%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액 중 잔여
유지하기 어렵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기간에 비례하는
정상적인 영업에 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본부와 부담액은 지급하지
현저한 지장을 함에 따라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간 아니하거나 이미
주는 경우 비용은 제외)	별도의 합의가 있는 지급한 경우에는
	경우 1년의 범위내 환수 가능
	에서 분화자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
	정한 자를 통하
	여 지점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
	는 지점환경개
	선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참밖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단</u>, 당사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지점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에서 당사 분담 비용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_	-	_	_	-	_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점관리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지점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 없음.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테스트/재원생 관리, 교재의 활용	집단 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원전까지	필수 교육
수시 교육	교육과정의 이해, 테스트/재원생 관리, 교재의 활용	집단 강의 실습교육	통지 후 7일내	_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2일	2,200	원장 포함 3인 기준
수시 교육	수시진행	_	비정기적

[※] 수시교육은 비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시 실비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을 사전통지하며, 교 통비, 숙식비는 개별 부담임.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 불참할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1조 (계약의 해지)
교육 · 운턴의 순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방침을 시키시 아니한 경우.	제40조 (계약의 갱신과 거 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제16조 (개시 승인)



9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주소
-	_	_	_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_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

※ 당사의 2024년 자료는 정기변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 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상황

























[별첨]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1. 구입강제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공급상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구입강제품목 리스트



[별첨] 판매상품 리스트 <교육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지역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가맹계약서 주요내용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Ⅲ.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I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V.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소요기간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지원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0. 기타

비밀유지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본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의 따른 자문을 받는 등 당 가맹사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출, 복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귀사에게 본 정보공개서를 신속히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하기 본인은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상기의 비밀유지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수령일자 : 20 년 월 일

장소 시간 제공자 : 에서 시에 에게 수령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수 령 자 : (인)

주 민 번 호 : 전 화 번 호 :

주 소

가 맹 본 부 : 주식회사 메타스콜레 대표자 귀하